

동래구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에서 의회 안내 및 행정업무 지원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사무국장

1. 채용개요

채용구분 (분야)	소속기관 (부서)	채용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기간제근로자 (의회 안내 및 행정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사무국)	1명	2026. 5. 4.~ 2026. 12. 31. (약 8개월)	· 의회 방문자 확인 및 등록 · 의회 현황, 업무 및 시설 등 안내 · 기관 내 행사 및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업무

2. 근로조건 등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12:00~13:00 휴게
- 근무장소: 동래구의회(1층 로비) ※ 행정업무 지원 시 이동 근무
- 보수기준
 - (고정급여) 시급 11,846원*(1일(8시간 기준) 94,768원), 정액급식비(월 16만원)
 - (기타 수당 등)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족수당(해당 시), 주휴·연차유급수당(해당 시)
 -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시급(11,846원): '2026년 동래구 생활임금' 기준으로 산정함.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 본인부담금: 월 급여 지급 시 공제(원천징수)

- 복무관리: 「부산광역시동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7조~제26조 적용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 응시자격(필수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

- 국회·지방의회, 국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대학원 등 교육 기관, 공공기관*에서 **담당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❶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기획재정부, '26. 1), ❷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go.kr), ❸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된 기관

** 담당업무: **청사(기관) 안내, 행정업무 담당·지원**

【 우대요건 인정 세부기준 】

1.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력으로서 **해당 증명서에 근무기간·담당업무·직위가 상세히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증명이 불명확한 경우 인정 불가)
2. 주 40시간 미만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법정 가산점 부여: 해당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금회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이 1명**이므로, 해당 **법정 가산점 미적용**

【 응시자격(필수요건) 관련 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결격사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p>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p>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하 생략)

4. 채용 방법

- 채용방법 · 절차:** 공개채용(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적격·부적격 판단)

□ 2차 면접전형

- (일시·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공고) 시 세부 일정 안내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진행방식) 개별 또는 그룹면접
- (평가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위원별 채점표에 의하여 평정요소*별로 점수 산정(상·중·하 구분)

【 *평정요소 】

1.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 점수(우대사항)를 합산한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 (동점자 처리)
 - (1순위)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 결정 ⇒ 해당 순으로도 같을 경우 '상'의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결정
 - (2순위) 상기 기준으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면접위원 간 합의를 거쳐 선발
- (예외사항)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중도 퇴직, 결격사유 해당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 공고	2026. 3. 25.(수)~4. 2.(목)	홈페이지(동래구의회·동래구)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6. 3. 31.(화)~4. 2.(목) ※ 토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13시) 제외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4. 7.(화)	홈페이지(동래구의회·동래구) 공고 (합격자 명단 및 면접전형 세부 일정)
면접전형	2026. 4. 20.(월)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4. 22.(수) 예정	홈페이지(동래구의회·동래구) 공고
근로 개시	2026. 5. 4.(월) 예정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지 배치

※ 해당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원서 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변경 내용 공고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교부:** 동래구의회 · 동래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래구의회: 의정활동 > 공지사항
 - 동래구청: 행정정보 > 동래소식 > 고시/공고
- } 채용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려받아
사용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시험장에서 배부 예정

□ **접수기간:** 2026. 3. 31.(화)~4. 2.(목) 09:00~18:00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미접수)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온라인, 택배,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동래구의회 5층 의회사무국 의정계(채용 담당자)

【 ※ 우편접수 시 참고 · 유의사항 】

- ▶ 우편주소: (우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별관 5층 동래구의회 사무국 의정계 채용 담당자 앞 (☎051-550-6652)
- ▶ 우편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기재
- ▶ 우편 접수 후, 반드시 전화(☎051-550-6652)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 의사 전달

□ 참고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의 보완 필요시, 보완(재접수) 기한 또한 접수 마감일 (18:00) 이내로 함.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심사 전형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예정
 - ※ 이 경우, 당초 응시자는 재공고에 따른 원서 접수 불필요
 - ※ 단,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 응시인원에 대한 적격 심사로 채용 가능

7.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 종이찍개(스태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②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④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 서식]
- ⑥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해당자 제출

- ⑦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⑧ 우대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 우대요건 경력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해당 증명서 상에 실무경력이 인정되는 직무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추가 제출

□ 제출서류의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청구)
 - 대 상: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원서 접수자
 - 기 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180일까지
 - 방 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상기 법률 시행규칙 서식3]' 작성 ⇒ 담당자 E-mail 제출
- (반 환)
 - 기 한: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 방 법: 특수취급우편물 발송(원칙) 또는 전달(청구자와 합의하는 경우)
 - ※ 청구하지 않은 제출 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단,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에 관한 정보는 응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8. 채용 비리 등 부적격자 조치

- 채용 비리 등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 개시 후 고용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조치대상) ※ 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1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전형)에 응시한 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거짓,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 그 밖의 「부산광역시동래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피해자 구제)

- 채용 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 피해자를 파악 후 구제 조치
- 방 법: 관련규정(상기 규정 제22조) 우선 적용, 구체적인 방안 확정 필요시 채용점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치

9. 기타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오 기재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서류 및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 또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및 발표 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와 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에도 합격(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내부 절차에 따라 추진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의회 사무국 의정계 채용 담당자(☎051-550-665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별첨) 응시자 제출서류 작성 서식(별지 제1호~제7호 서식). 끝.